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52호(號) 1933(昭和 8)년 7월 13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22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7월 1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7월 13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63조(條)제1항(項)의 다음[次]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운임(運賃) 및 요금(料金)은 최단경로(最短經路)의 킬로미터(料程·km)에 의(依)해 이것을 계산(計算)함. 단(但) 경의선(京義線) 방면(方面)과 평원선(平元線) 또는 만포선(滿浦線)과의 상호간(相互間)에 발착(發著)하는 특별톤급(特別噸扱) 및 차급화물(車扱貨物)은 서포경유(西浦經由)의 킬로미터(料程·km)에 의(依)함.